

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 +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 소송중지 결정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혼재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용 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위 NDA를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  
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  
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  
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  
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 판결에서 보듯 용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  
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  
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계약분쟁, 국제계약, 기업법무, 기술법무, 손해배상, Claim, License , 중재합의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